

고 소 장

발생·접수 사건 검토		
접수번호		
접수일시	2024. . . :	
보고대상 (범죄수사 규칙 별표)	해당	해당없음
		✓
이관대상	해당	해당없음
		✓
경찰서 집중관리	해당	해당없음
		✓
확 인		
강서서 수사과		

방문·우편·인터넷·검찰이송·행정망		통지수단선택			
접수일자	2024. 06. 10.	SMS	우편	E-mail	확인불능
접수번호(민원)	2024-02-773				
접수번호(정식)	2024-004101				
사건번호					

죄 명	무 고	결 제			
고소인		담 당	팀 장	과 장	서 장
피고소인	배 지 현			전 결	
담당팀	수 사 2 팀				
수사관	신 계 진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강간으로 고소(사건번호 2023-4551)

부산강서경찰서장 귀하

사 건

무고

고 소 인



피고소인

배 지 현

고 소 장

고소인의 고소대리인

공동법률사무소 : 

담당변호사 : 

부산강서경찰서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피고소인 배지현

연락처 : 010-9412-8714

죄 명 무고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아래와 사실로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고소

피고소인은 2023. 일자불상경 고소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부산강서경찰서 2023-004551)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고소장 참조).

2. 명백한 허위 사실의 신고

가. 증 제1호증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2022. 5. 31.부터 현재까지의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과거의 직업 등을 피고소인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이전에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협박을 일삼았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반복하여 당해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고소인은 단 한 번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2023. 6. 7.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증 제2호증 2023. 6. 4.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나 버리지마. 엄마도 할때도 내 사정도  도 또 떨어지고 뭐가 되는게 없어서’, ‘미안하다 맘아프게 해서’, ‘그리고 오빠가 날 버리면 살아갈 수 없다는걸 알기에 어찌해서든 더 발버둥치려하고’, ‘ 수요일(2023. 6. 7.) 꼭 만나서 열

굴보자’ 라고 각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길 원하였고, 고소인에게 2023. 6. 7.에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증 제3호증 2023. 6. 7.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날 만날 것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17:30경에 만나고 헤어진 이후인 20:30경 이후로도 강제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어떠한 대화도 없이 연인관계로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날인 증 제4호증 2023. 6. 8.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협박, 강간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다. 한편 위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2023. 6. 28. 오전 11.경 피고소인에게 미안하다고 잠시 보자며 피고소인의 집으로 막무가내로 찾아왔고, 협박,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증 제5호증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소인은 2023. 6. 26. 고소인에게 ‘자? 안보니 보고싶다 힘드네’, ‘넌(내일) 아홉시 마치는데 얼굴볼까 잠시 엄마내일 일마치고 할매집갈걸 할머니집 짐정리하러 아님 낮에 잠시볼래? 넌 답답하다’ 라고 하면서,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결코 강제적인 관계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2023. 6. 27. 고소인에게 ‘금울(금요일) 점심때보던지! 12시’, ‘아님 목요일 금울은 밖에서 목울은 잘하면 집’ 이라 말하였고, 2023. 6. 28. 고소인에게 ‘넌(내일) 아침 11시 집에와 엄마엄씨’ 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넬’은 2023. 6. 29. 목요일입니다. 즉 고소인에게 2023. 6. 29. 11:00경까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람은 피고소인이었고, 고소인이 막무가내로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위 고소장 기재 이날 협박, 강간도 고소인이 지어낸 말이며, 증 제5호증에는 이를 나타내는 어떠한 대화도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당시 연인관계였습니다.

라. 위 고소장에는 다른 허위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건과는 무관하므로 본 고소장에는 이에 대한 해명은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나눈 2023. 6. 1.부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텍스트본을 증 제6호증으로 제출하며, 그 외 고소인이 부산강서경찰서 2023-004551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인 피고소인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토스뱅크 통장 거래내역(거래내용 기재 참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으로 제출합니다.

3. 무고죄의 성립

가.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나. 피고소인의 무고행위



1)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강간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부산강서경찰서 2023-004551 사건에 대해, 강서경찰서는 2024. 3. 20.자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증 제11호증 불송치 결정서 참조).

○ ‘가’항(2023. 6. 7.)의 강간

(중략)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이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를 하자며 호텔 예약 문자를 발송하여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호텔에 가게 되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호텔 확인한 바 당일 18:00경, 인터넷 ‘여기어때’ 앱을 통해 피해자 ‘배지현’ 이름으로 예약된 사실 확인되고, 피해일시경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오늘 몇시봐?, 만나자, 다와가면 전화해” 등 피의자의 강요가 아닌 서로 합의하에 만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의자가 ‘부모님께 알리겠다. 지원한 돈을 다 갚아라’ 등의 말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나,

범행일시경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아 협박한 사실 확인되지 않고, 이후 8. 5.자 피해자와 다툼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 없다. 또한 피해일시 이후 당일 저녁에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외 강간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강간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 불충



분하다.

○ ‘나’항(2023. 6. 28.)의 강간

피해자는 전 ‘가’항의 이유로 피의자가 막무가내로 집 앞으로 찾아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고자 집으로 오게 하였는데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겨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 확인한바, 피해일시경 피의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와의 만남을 위해 6. 28. 10:50경, “넌 아침 11시에 집에와 엄마엄씨”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만난 사실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강제적인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의자와 몸싸움을 하다 자신의 눈부위가 부딪쳐 멍이 들었다며 피해사진 제출하나,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토스뱅크 이체 메시지 등 종합한바, 당시 피의자와 대화내용에도 강간 피해 및 상처부위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해당사진이 피해일시와 인접한 날짜에 촬영된 사실 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범행당시 피의자의 강간행위에 수반된 상처인지 판단 불가하므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즉 강서경찰서의 조사결과 피고소인의 고소사실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소인에게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이에 응

하지 않자, 성범죄 사건의 형사처분이 남성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끼치는 점을 적극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고소장
1. 증 제2호증	2023. 6. 4.자 카카오톡 메시지
1. 증 제3호증	2023. 6. 7.자 카카오톡 메시지
1. 증 제4호증	2023. 6. 8.자 카카오톡 메시지
1. 증 제5호증	문자메시지
1. 증 제6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본
1. 증 제7호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증 제8호증	토스뱅크 통장 거래내역
1. 증 제9호증	문자메시지
1. 증 제10호증	이메일
1. 증 제11호증	불송치 결정서

2024. 6. .



부산강서경찰서 귀중

